한국경호경비학회 – 제46호(2016): 141–169

투고일 2016. 2. 10, 심사일 2016. 3. 13, 게재확정일 2016. 3. 13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 상 열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 상 열*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찰활동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장애인들의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집합효율성이론과 취약성이론에 기초하여 경찰활동과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지체장애인의 설문의 한계로 실무자 집단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25개 지부에 근무하는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지부 5명씩 총125명으로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하였으며, 125명의 대상자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3인을 제외한 122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합효율성의 경우 범죄두려움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간접피해경험의 경우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적인 피해경험의 경우 정적인 관계로 기존 연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신뢰와 경찰활동의 인식의 경우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범죄두려움, 지체장애인, 집합효율성, 범죄피해, 경찰신뢰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론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는 기존의 자연적 재난, 안적 재난 및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아울러 '국민생활안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즉,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인간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안전요인을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이다(류상일 · 이민규 · 안혜원, 2010).

통계청의 「2014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분야별 안전 정도에 대한 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안전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일반적으로 사회안전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51.6%), 건축물 및 시설물(51.3%), 교통사고(56.2%), 신종 전염병(55.1%) 등의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감을 나타냈다(치안정책연구소, 2015).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 관련 담당부서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산업

및 과학문명의 이면에는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인 수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김종구, 2009).

최근 들어 범죄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합의 등의 명목으로 탄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종용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서울신문, 2015. 9. 14).

지난 2015년 5월 18일 오전 새벽 4시경 십 수 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도 열심히 살아가던 지체장애3급인 지체장애인이 30대 취객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으로 실명된 사건이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 조차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해자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범죄로 연루된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은 가해자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장애인들은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댈 곳은 마땅치 않다(세계일보, 2014. 8. 20).

한편 국내에서도 장애인 범죄를 비롯해 장애인 인권 등과 관련된 상당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장애인 안전,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인 범죄두려움에 대한 논문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현재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고, 그러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장애인들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개관

1)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제시된 장애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손상

(impairments), 장애(disability) 및 사회적 불리(handicaps)이다. 손상은 심리-해부학적 구조나 기능 상실 혹은 이상을 의미하고, 장애는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정상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불리는 주요 환경적응에 있어서 독립성의 상실이나 사회-경제적인 개인 생활상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제한성을 뜻한다(김후경, 2011).

한편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단순하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장애인 정책수립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으며,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하는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오혜경, 1999).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이주희, 2013).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박창진, 2011). 장애인이란 "연령, 인종, 성, 장애 등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의해 다수의 집단과 분리, 차별 혹은 소외되기 쉬운 소수집단(minor group)을 의미한다(문완기, 2003).

2) 지체장애의 개념 및 특성

(1) 지체장애의 정의

지체장애(physical disabilities)란 질병 또는 외상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체의 체간 혹은 사지 부위에 영구적인 운동장애를 입은 상태를 의미한다(Auxter, Pyfer,

Zitel & Roth, 2009; 김춘종, 2011). 지체장애란 팔과 다리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의미한다. 운동기능장애란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자기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박화문 외, 2011; 김정란, 2012).

지체장애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하반신, 척수, 전신에 전단, 마비, 기형 및 변형, 관절운동장애로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서 불편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이호영, 2011).

사람의 몸은 골조가 되는 골격과 골격 사이의 관절,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 그리고 이 기관들의 영양을 담당하는 혈관들로 구성되어 사지 및 몸통을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질병이나 외상들로 몸통이나 사지의 지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기능의 장애가 올 때 지체장애로 정의한다(전영호, 1994).

지체장애에 대해 1920년「프로이센 지체장애보호법」제9조에서는 의학적 측면에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 골 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사지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장애가 되어 일반 작업장에서는 생업능력이 뚜렷이 침해되리라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순히 기능상의 장애만으로 지체장애를 정의할 때는 사람의 몸 가운데 골격, 근육, 신경 중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될 때 대체로 운동장애, 감각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골절이나 근육의 파열상 등으로 지체의 운동에 일시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급성 또는 아급성 질환으로 어느 기간 동안 지체운동이 부자유한 상태일 때는 지체장애라 보지 않고, 단지 그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만 지체장애라고 정의한다(남상만·나운환·유명화, 1997).

한편 지체장애의 유형은 뇌성마비를 비롯해 뇌졸중, 척수장애, 근육디스트로피(진행성 근육위측증), 류마티스(관절염), 소아마비, 절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체장애의 행동상태에 따라서는 보행가능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팔 혹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지체장애의 특성

지체장애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신체, 지능, 행동,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

할 수 있다(지양진, 1993; 김정란, 2012).

① 신체적 특성

지체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발달이 느리고 발달의 개인차가 심하여 불규칙적인 발달을 한다. 대개 운동부족과 영양상의 문제로 남녀 모두 키와 몸무게가 적은 편이며,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지구력 등의 운동기능도 열등한 편이다. 지체장애인은 질환의 원인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체격이나 운동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발달이나 운동기능에 있어서 열등한 편이다.

② 지능적 특성

지체장애인은 질병의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그 행동이 제한되어 경험의 영역이 협소하고 견문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전적 소질이 모두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체장애가 그들의 지능 개발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행동적 특성

지체장애인은 감각을 통한 학습의 제한과 지각장애에 의한 인지의 부족으로 행동발달이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은 질환의 원인, 장애의 정도, 부위, 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접촉하는 사람의 수와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경험이나 견문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④ 심리적 특성

지체장애인은 대개 일반인에 비해 열등감, 불안, 공격성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요소가 자아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애 그 자체가 건전하고 정확한 신체상을 갖기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과보호, 과도한 요청, 부모와 사회에 대한 적의, 만족할 만한 사회참여의 결여, 이에 따른 좌절감, 사회인의 차가운 반응 등이 부정적인 특성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김승국, 1981).

2. 범죄두려움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경찰학과 범죄학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핵심적인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Lagrange & Ferraro는 범죄두려움에 대해 "범죄에 관련한 개인의 범죄 또는 이와 관련한 상징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dread)이나 불안(anxiety)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였다(Lagrange & Ferraro, 1987). 이와 같은 범죄두려움은 시민의 활동성을 제한하고 시민이 가정과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와 같은 기분이 들게 하며, 이웃관계를 악화하며, 심지어는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Taylor, 1989; Ross, 1993).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다루어져 온 이유는 바로 범죄두려움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Sutton & Farrall, 2005; Jackson, 2004). Nasar & Jones(1997)에 따르면 범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심리적·육체적인 건강과 관련한 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Hale(1996)은 다수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불안감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 행복한 삶을 방해, 외부활동의 제한, 많은 비용이 드는 예방정책의 시행, 범죄다발 지역으로 이주를 막으며, 사회적 신뢰의 붕괴, 그리고 사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해친다고 주장한다(Hale, 1996).

특히,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경찰활동의 가시성과 범죄두려움, 범죄안전과 범죄두려움, 교통안전과 범죄두려움(체감안전), 질서안전과 범죄두려움(체감안전)에 관한 연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다. 경찰활동의 가시성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Charles Bahn(1974)의 연구, 최천근(2011), 윤우석(2015), 정철우·강소영(2014), 차훈진(2010)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Charles Bahn(1974)은 "The reassurance factor in police patrol"에서 경찰활동의 가시성과 시민의 안전감은 시민과 경찰관 사이의 친밀감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주변에 있기를 원하며 더욱 안전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천근(2011)의 연구에서는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나타내는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을 위해 '관할 인구 당 경찰공무원의 수'에 주목하였다. '관할 인구 당 경찰공무원의 수'가 많은 경찰서는 그렇지 못한 경찰서에 비해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역량이 더 크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가능하게 하

고 개인의 범죄두려움인 체감안전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윤우석(2015)의 연구에서는 시민이 경찰의 순찰활동을 목격할 경우 순찰활동의 목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철우 · 강소영(2014)의 연구는 대부분의 시민은 순찰활동, 교통질서 위반, 사고처리, 기타 법질서 단속 등을 통해 경찰과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시적인 경찰활동은 범죄안전 요인인 범죄 · 교통 · 질서안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요인은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체감안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차훈진(2010)의 연구에서는 시민이 안심하는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의 안전감을 측정하고 이를 실제 범죄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범죄두려움인 체감 치안지수로 활용 가능할 것이며, 이는 가시적 경찰활동이 긍정적일수록 범죄두려움인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안전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성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취약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최천근, 2011). 더욱이 여성과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은 범죄에 대해 취약계층으로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범죄두려움 역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범죄두려움의 개념인 체감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즉, 범죄두려움은 그것을 느끼는 대상에 따라 범죄두려움인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정철우 · 강소영, 2014).

교통안전과 범죄두려움(체감안전)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경찰청(2014)은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체적인 인구대비 노인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은 30%에 이르며 OECD 평균(18.8%) 수치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범죄두려움인 체감안전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2013)의 치안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야의 치안만족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교통단속, 교동사고조사 시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불친절 · 불공정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은 경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과 관련한 체감안전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정철우 · 강소영, 2014).

질서안전과 관련한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무질서 모델과 관련이 있는 연구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환경 파괴를 목격한 개인들은 주위의 환경이 위협적

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가정하며, 이로 인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는 느낌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최천근, 2011).

우리 사회는 질서안전을 무질서 행위 및 실정법상 경미범죄처벌법, 도로교통 관련 위반 단속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와 그 범위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정철우 · 강소영, 2014). 법질서 분야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은 법질서의 확립과 법집행의 공정성이 실제로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이 신뢰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에 도움을 주고 있어 치안정책의 방향에서 강조되는 분야이다(신의기 · 강은영, 2012).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사회는 형사사법기관들에 대한 신뢰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이민식 · 신의기, 2010) 질서유지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은 범죄두려움인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범죄두려움(체감안전) 영향요인 요약

영향요인	주요 변수	비 고
가시적 경찰활동과 시민인식	경찰과 시민의 접촉(범죄예방활동, 교통질서위반행위, 사고처리, 기타 법질서 단속 등)	가시적 경찰활동의 긍정적 → 체감안전도 상승
범죄안전과 범죄두려움	범죄취약계층(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범죄피해자 개연성 상존	범죄취약계층 → 범죄두려움 증가
교통안전과 치안만족	교통사고 비율 증가 교통관련 체감지수(불친절 · 불공정)	교통에 대한 인식 → 경찰에 대한 인식 영향
질서안전과 국민신뢰	무질서 행위, 경미범죄처벌법, 도로교통 위반 단속 등 법집서 확립과 법집행의 공정성	법질서 준수 → 형사사법기관 신뢰 제고 → 체감안전도 영향

1) 범죄두려움의 원인

이러한 범죄두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면 취약성모델, 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 등으로 다양하게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Hale(1996)은 신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박영주 · 윤우석(2013)은 개인의 범죄피해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체적 · 사회적으로 대응능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범죄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체적 · 사회적으로 대응능력이 약한 소수자들(minorities)은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낮은 사람은 그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에 보다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한다(장철영, 2014).

무질서 모델이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으로서 지역의 무질서한 환경 하에서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모델이다(Covington & Taylor, 1991; 장철영, 2014). 이러한 주장은 지역 구성원들이 무질서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이유는 지역 내의 모든 환경과 행동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때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역 구성원들은 지역의 범죄는 통제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범죄두려움 또한 크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이성식, 2000).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되는데 길거리의 쓰레기, 버려진 차량, 낙서 등이 대표적인 물리적 무질서와 주취자, 거리에 존재하는 불량배 등 사람의 행위적인 측면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된다. 무질서 모델은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의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Wilson & Kelling, 1982). 한편 인지 무질서 모델이란 잠재적 피해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모델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지역사회에 대한 취약성의 지표가 된다(박정선, 2011).

사회통합모델은 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과 근간을 둔 모델로서 낮은 소득수준, 높은 인구의 이동률, 높은 가정의 붕괴율, 그리고 이질적인 인종 구성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적으로 해체된 지역사회와 이로 인한 지역 구성원들 간의 사회유대 약화 또는 통합력의 약화가 지역 구성원으로 하여금 낮은 사회 통제력을 인식하게 되고 범죄피해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범죄두려움이 증가한다고 본다(Taylor & Hale, 1986). 이러한 사회통합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은 낮아지며, 사회통합수준이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Skogan & Maxfield, 1981; Rountree & Land, 1996). 하지만 Wilson(1996)에 따르면 또 다른 지역 사회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역유대 및 통합이 오히려 범죄를 비롯한 사회통제를 저해할 수도 있으며(Wilson, 1996), 오히려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지역 구성원이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기도 했다(Villarreal & Silva, 2006).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피해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공식적 사회통제인 경찰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에서는 경찰이 법집행자로서 보다는 대민봉사자로서 우선 대민접촉을 늘리고, 지역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함을 강조하면 범죄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철영, 2014).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약성 모델, 무질서 모델, 사회통합 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범죄두려움(체감안전) 영향 요인

모 델	원 인
취약성 모델	여성(성별), 노인(연령), 소수인종, 취약지역 거주민, 범죄피해에 대한 직 · 간접 경험(언론매체의 영향), 교육수준, 수입
무질서 모델	거리의 쓰레기, 낙서, 방치 차량(물리적 무질서) 거리의 불량배, 만취자, 노숙인(사회적 무질서)
사회통합 모델	지역해체, 낮은 유대감, 신뢰감, 사회자본 등 비공식적 통제요인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 경찰에 대한 만족도 · 신뢰감

자료: 치안정책연구소, 2015: 196.

3.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발표된 장애인 체감안전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생활안전을 비롯하여 체감치안(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두오균(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안전에 있어서 이동의 제약은 치명타가 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 및 편의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기회차원이 아닌 권리차원에서 평등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미 · 탁종연(2007)은 경사 이하 272명을 대상으로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설문조사 실시 결과 영향요인으로 최종학력, 인권교육, 그리고 장애인 친족 여부인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가족이나 친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우석(2015)은 가시적 경찰활동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결과 경찰의 생활안전 기능이 비록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응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일상적인 경찰활동이 범죄예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석 결과 무질서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무질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경찰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철우 · 강소영(2014)은 2012년 하반기 경찰청에서 실시한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자료인 2차 데이터(5,204건)를 바탕으로 체감안전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시적 경찰활동은 범죄, 교통, 질서안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각각의 요인들은 체감안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결과에서는 가시적 경찰활동이 범죄안전에 강한 영향을 주었고, 범죄안전요인은 체감안전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천근(2011)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에 대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나아가,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가시적 순찰활동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방범활동과 같은 범죄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선(2011)의 범죄두려움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결과 지역수준에서는 거주기간, 이사경험, 무질서 정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결정하였고, 개인수준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 직업, 경찰신뢰성 및 범죄피해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입안 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장안식 · 정혜원 · 박철현(2011)은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 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 · 절도 · 폭행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고, 남성은 낮은 수준에서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도 · 절도 · 폭행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연령이 성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도선(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낮을수록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의 수준이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범죄예방 업무의 주체인 지역경찰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줌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경찰의 일상적인 활동 즉, 주업무가 범죄예방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체감안전(범죄두려움)에 무질서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참고하여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가시적인 활동이 시민들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순찰 특히, 도보순찰의 강화가 필요하며, 장애인 체감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경찰기관의 협력관계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체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사용된 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지체장애인은 설문에 직접적인 응답이 곤란한 점이 있어 실무자 집단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25개 지부에 근무하는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지체장애인협회 각 지부 5명씩 총125명으로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하였으며, 125명의 대상자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3인(중구 2인, 중랑구 1인)을 제외한 12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강남권 6개(강동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동작구), 강북권 14개(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은평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강서권 5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로 구분하였으며, 강남권 30명(24.4%), 강북권 67명(55.3%), 강서권 25명(20.3%)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은 구체적 두려움으로 Warr(1994)의 설문을 국내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Ferraro와 LaGrange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두려움의 측정은 범죄에 대한 판단(judgment)이나 염려(concern)보다는 범죄의 구체적 형태 즉, 특정유형의 범죄피해가 제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김연수, 2010: 84).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범죄피해유형인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칠 가능성',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훔칠 가능성', '누군가 나를 폭행하여 다치게 할 가능성',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 '누군가 물건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 가능성 ', '누군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할 가능성', '누군가 강제로 가두거나 어디로 데리고 갈 가능성', '누군가 협박하거나 위협할 가능성',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가능성' 총 9문항을 1) 아주 낮다, 2) 낮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높은 편이다, 5) 아주 높다의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을 내어 범죄두려움으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집합효율성, 범죄피해경험, 경찰활동과 경찰인식이다. 집합효율성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주민유대"로 측정하였다.

"비공식 사회통제"는 Sampson과 동료들(1997)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만약 동네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고 있다면 그러지 못하게 어떤 조치(신고, 개입 등)를 취할 것이다', '만약 불량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한다면 그러지 못하게 어떤 조치(신고, 개입 등)를 취할 것이다', '만약 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면 어떤 조치(신고, 감시 등)를 취할 것이다' 총 3문항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지역주민유대"는 Sampson과 동료들(1997)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서로 잘 알고 지낸다', '서로 돕고 지낸다', '서로 신뢰한다', '서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총 4문항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직접피해경험”, “간접피해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직접피해경험”, “간접피해경험”은 범죄피해자조사(2011)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돈이나 물건을 도난 당한 적이 있다’,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폭행으로 인하여 다친 적이 있다’, ‘성추행 ·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기물을 파손당한 적이 있다’, ‘집에 누가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다’, ‘강제로 갇히거나 어디로 끌려간 간 적이 있다’,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차량 파손을 당한 적이 있다’ 총 9문항을 1) 있다 2) 없다로 측정하였고 총합을 내어 사용하였다.

경찰활동과 인식은 “경찰활동인식”, “경찰신뢰”로 측정하였다. “경찰활동인식”은 Mazerolle와 동료들(2000)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경찰관이 낮에 순찰하는 것을 보았다’, ‘경찰관이 밤에 순찰하는 것을 보았다’, ‘경찰관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관이 검문하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을 보았다’ 총 5문항을 1) 거의 매일, 2) 1주일에 한번, 3) 한 달에 한번, 4) 한달에 몇번, 5) 거의 없음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연구결과의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한 후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경찰신뢰”는 Mazerolle와 동료들(2000)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경찰관들을 신뢰한다’, ‘전반적으로 경찰관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경찰관들을 지지한다’, ‘전반적으로 경찰관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경찰관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총 5문항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 간 장애인들의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찰활동의 인식이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중 집합효율성을 측정하는 변수, 직 · 간접 범죄피해경험 마지막으로 경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켰다. 각각의 변수들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있어 가정 중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고 모든 변수가 1.8보다 낮은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각각의 변수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값을 제시하였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단계마다 R^2 변화량을 제시하였다.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통계툴은 IBM사의 SPSS 21.0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응답자의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
성 별(명)			
남 성	78	63.41	
여 성	45	36.59	
합 계	123	100	
연 령			
20대	3	2.44	52.70세
30대	12	9.76	
40대	27	21.95	
50대	46	37.40	
60대이상	35	28.46	
합 계	123	100	
근무기간			
1년 미만	17	13.82	39.60개월
2년 미만	24	19.51	
3년 미만	16	13.01	
4년 미만	33	26.83	
4년 이상	33	26.83	
합 계	123	100	

성별의 비율은 남성 78명으로 63.41%, 여성 45명으로 36.59%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50대 이상이 46명으로 37.40%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 35명 28.46%, 40대 27명 21.95%, 30대 12명 9.76%, 20대 3명 2.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의 경우 4년 이상이 33명 26.83%, 4년 미만이 33명 26.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 미만 24명 19.51%, 1년 미만 17명 13.82%, 3년 미만 16명 13.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요약하면 50대 이상이며 남성이고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2.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1)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표 4〉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남성	1.96	0.72	-1.05
여성	2.10	0.78	

성별의 경우 여성응답자의 범죄두려움의 평균값이 2.10이고 남성응답자의 경우 1.95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응답자의 경우 남성응답자에 비하여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대하여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t=-1.05, n. s.).

2) 연령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연령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의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령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20대	1.37	0.55	-1.05
30대	2.04	0.75	
40대	2.13	0.85	
50대	2.06	0.75	
60대 이상	1.91	0.64	

50대에서 2.06으로 가장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령대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의 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근속기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근속기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표 6>의 결과와 같다.

〈표 6〉 근속기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1년 미만	2.01	0.69	0.49
2년 미만	1.92	0.67	
3년 미만	1.89	0.59	
4년 미만	2.15	0.87	
4년 이상	2.04	0.75	

4년 미만에서 2.06으로 가장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근속기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응답자의 근속기간에 따라서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의 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7> ~ <표 10>은 범죄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여 집합효율성, 범죄피해경험, 경찰활동과 인식을 변수들을 각각 다중회귀시킨 결과이다.

〈표 7〉 범죄두려움에 대한 집합효율성의 다중회귀분석결과

구 분	b	β	t
지역주민유대	-0.20	-0.23	-2.41*
비공식적사회통제	0.13	0.16	1.66
상수	2.30	.	7.08
R-squared	0.05		

*p〈0.05, **p〈0.01, ***p〈0.001

<표 7>은 집합효율성을 범죄두려움에 다중회귀시킨 분석결과이다. 집합효율성의 변수들이 범죄두려움을 약 5%를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가 높을수록(p<0.05)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23)

〈표 8〉 범죄두려움에 대한 범죄피해경험의 다중회귀분석결과

구 분	b	β	t
직접경험	0.22	0.35	3.44***
간접경험	0.09	0.15	1.48
상수	1.87	.	28.56
R-squared		0.20	

*p〈0.05, **p〈0.01, ***p〈0.001

<표 8>은 범죄피해경험을 범죄두려움에 다중회귀시킨 분석결과이다. 범죄피해경험의 변수들이 범죄두려움을 약 20%를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접경험이 있는 장애인일수록(p<0.001) 범죄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35)

〈표 9〉 범죄두려움에 대한 경찰활동과 인식의 다중회귀분석결과

구분	b	β	t
경찰활동	-0.02	0.01	-1.74
경찰신뢰	-0.16	0.08	-2.11*
상수	2.76	0.27	10.37
R-squared		0.06	

*p〈0.05, **p〈0.01, ***p〈0.001

<표 9>는 경찰활동과 인식을 범죄두려움에 다중회귀시킨 분석결과이다. 경찰활동과 인식의 변수들이 범죄두려움을 약 6%를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을 신뢰하는 장애인일수록(p<0.001)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11)

<표 10>은 범죄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여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근속기간을 통제한 다음 집합효율성, 범죄피해경험, 경찰활동과 인식의 변수들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model 1은 집합효율성의 변수인 지역주민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범죄두려

〈표 10〉 범죄두려움에 대한 통합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성 별	0.18	0.12	1.21	0.24	0.15	1.81	0.25	0.17	2.01*
연 령	0.00	-0.05	-0.48	-0.01	-0.10	-1.16	0.00	-0.07	-0.78
근속기간	0.00	0.04	0.46	0.00	0.05	0.56	0.00	0.07	0.82
지역주민유대	-0.20	-0.23	-2.37*	-0.20	-0.22	-2.61*	-0.17	-0.19	-2.25*
비공식적 사회통제	-0.16	-0.20	-2.02	-0.12	-0.15	-1.75	-0.18	-0.23	-2.56**
직접피해경험	2.07		3.85	0.23	0.38	3.80***	0.20	0.32	3.27**
간접피해경험				0.09	0.14	1.44	0.11	0.19	1.94#
경찰신뢰							-0.15	-0.17	-1.95#
경찰활동인식							-0.02	-0.17	-2.18**
상수	2.07	-	3.85***	2.13	-	4.49***	2.39	-	5.08***
R-squared	0.07			0.29			0.35		
ΔR-squared	-			0.22			0.06		
N	122			122			122		

※ 1) *p〈0.05, **p〈0.01, ***p〈0.001
2) b: 회귀계수, β: 표준화회귀계수, t: t점수

움에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집합효율성의 변수들이 범죄두려움을 약 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유대가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β =-0.20, p<0.05)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지역주민 간의 신뢰와 왕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범죄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과 같이 범죄두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 =-0.16, n. s.)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집합효율성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범죄피해경험에서의 직접피해경험과 간접피해경험을 범죄두려움에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범죄두려움을 약 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주민유대의 경우 model 1과 같이 유의하게 나타났다(β =-0.22). 직접범죄피해의 경우 값이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이 증가하는(β =0.38, p<0.01)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사회유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범죄두

려움이 낮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간접피해경험의 경우 기존의 연구과 같이 범죄두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 =0.14, n. s.)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피해가 지역주민유대에 비하여 범죄두려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은 집합효율성, 범죄피해경험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찰활동과 인식의 변수인 경찰신뢰와 경찰활동인식을 범죄두려움에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경찰활동과 인식의 경우 범죄두려움을 약 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주민유대, 직접피해경험의 경우 model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model 2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간접피해경험의 경우도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신뢰가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아지는(β =-0.17, p<0.1)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활동인식의 경우 범죄두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0.17, 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활동의 가시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찰과의 접촉이 많은 장애인일수록 범죄두려움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종합해보면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설명력이 22%인 범죄피해경험이며 다음으로 경찰활동과 인식이 6%를 설명하는 것으로 집합효율성이 5%로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범죄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력은 미치는 것은 직접범죄피해경험(β =0.32)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유대와 직접범죄피해경험 간접범죄피해 경찰신뢰의 경우 기존의 범죄두려움의 연구결과와 같이 지역주민유대, 경찰신뢰의 경우 범죄두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접범죄피해경험의 경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활동인식의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범죄두려움의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인만 연구대상으로 한정한 기존의 범죄두려움의 연구결과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두려움 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범죄두려움의 연구대상이 일반인들로 한정되었던 것에 반하여 실제로 사회에서 가장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들 대상으로 경찰활동의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수행 되었다. 연구자는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지역적 특성인 비공식적 통제, 지역주민유대와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 경험, 경찰활동인식과 경찰신뢰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2015년 12월에 서울시 지체장애자협회에 근무하는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 하였다.

분석결과 비공식적 통제, 지역주민유대, 범죄피해경험 등의 기존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두려움의 연구와 같이 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 변수들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강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범죄피해 시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바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은 이러한 문제 발생 시 타 지역에 비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이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주민유대의 경유 높은 유대관계를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지역주민이 범죄피해 발생을 예방해 줄 가능성이 높고 범죄피해 시 신고 및 피해회복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경찰활동인식과 경찰신뢰가 범죄두려움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경찰활동의 인식이 강할 경우 이를 범죄대응의 목적으로 인식하여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경찰활동 강화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장애인 가정 및 시설에 대한 순찰강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장애인의 경우 경찰활동의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경찰활동이 범죄대응으로 인식될 경우 범죄두려움이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경찰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예방적 성격의 경찰활동의 강화라는 인식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범죄피해경험이 범죄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의 경우 범죄피해 후 회복이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장애인의 범죄피해회복을 위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인식의 변화이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의 유대와 지역주민의 통제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지역의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도와주고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역주민간의 신뢰와 왕래를 높일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들의 선정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경찰과 범죄두려움의 관한 기존의 연구가 일반인만을 대상만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약자이고 범죄로부터 가장 취약하며 범죄발생시 대응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그 중에서도 서울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측정의 한계이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내포하는 있는 변수의 경우 지역사회의 단위로 측정하여하고 분석의 단위 또한 구분하여 연구해야 하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지역적 특성을 개인에서 설문하였고 분석단위도 개인에 한정 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기존의 범죄두려움의 대상을 범죄로부터 가장 취약하며 범죄발생시 대응 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넓혔다는 점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경찰청 (2013). 2013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_____ (2014).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경찰청 브리핑 자료.

김승국 (1981). 장애와 의식(Ⅰ),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김정란 (2012). 지체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구 (2009). 지방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종 (2011). 지체장애인 신체활동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후경 (201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상만 · 나운환 · 유명화 (1997). 장애인복지론, 서울 : 홍익재.

두오균. (2010). 장애인의 생활안전 문제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3), 206-222.

류상일 · 이민규 · 안혜원 (2010). 국민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45.

문완기 (2003). 지체장애인의 이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주 · 윤우석 (2013). 대학캠퍼스 내 대학생들의 범죄두려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0, 162.

박정선 (2011). 범죄두려움의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수준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죄와 비행, 1, 75-96.

박화문 · 전헌선 · 김영한 · 김정희 · 김창평 (2011). 지체부자유아 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신의기 · 강은영 (2012).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구총서, 2012(4), 1-310.

심명섭 · 이창한 (2015). 핫스팟 경찰활동 예정지역에서의 범죄두려움과 그 영향요인 분석: 다목적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인접지역 간의 비교.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5, 245-266.

오혜경 (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서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윤우석 (2015). 가시적 경찰활동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경찰역할인식의

중요성. 한국범죄학, 9(1), 187-220.
이도선 (2011).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6(2), 143-169.
이민식 · 신의기 (2010). 법질서확립지수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21(4), 33-59.
이성식 (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133-159.
이종형 · 장훈도 · 임은기 (2009). 육군 안전체감 척도 개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0(4), 2621-2638.
이영미 · 탁종연 (2007).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연구. 한국경찰연구, 6(3), 3-30.
이호영 (2011). 지하생활공간에서 지체장애인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안식 · 정혜원 · 박철현 (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형사정책연구, 22(3), 291-326.
장철영 (2014). 경찰의 종합 체감안전도(범죄 두려움)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적 논의. 경찰학논총, 9(1), 96-101.
전영호 (1994). 장애인복지론, 서울 : 학문사.
정용기 (2015).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3, 179-200.
정철우 · 강소영 (2014).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3(4), 262-269.
차민규 · 곽대경(2014).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 389-407.
차훈진 (2010). 영국의 시민안심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0, 337-362.
최선우 (2003). 경찰과 커뮤니티, 서울 : 대왕사.
최천근 (2011).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02-117.
치안정책연구소 (2015). 2015 치안전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 국외문헌

Auxter, D. Pyfer. J., Zitel, L., & Roth., K. (2009). Principles and Methods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ction(11th Edition), New York : McGraw-Hill.
Bahn, C. (1974). The reassurance factor in police patrol, Criminology, 12(3), 338-345.
Covington, J. & Taylor. R. B.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2), 231-249.
Hale, C. (1996). Fear of Crim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4(2), 79-150.

Jackson, J. (2004). Experience and Expression: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in the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6), 946-966.

LaGrange, R. L. & Ferraro. K. F. (1987). The Elderly's Fear of Crim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Research, Research on aging, 9(3), 372-391.

Mclaughlin, Eugene & Muncie, John. (2006). The Sage Dictionary of Crimilogy, London: Sage Publicatons, Ltd.

Ross, C. E. (1993). Fear of victimization and healt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2), 159-175.

Skogan, W. & M. G. Maxfield. (1981). Coping with Crime : individual and neighborhood reactions, Beverly Hills: Sage Publicatons Ltd.

Sutton, R. M. & Farrall. S. (2005). Gender,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and the fear of crime are women really more anxious about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5(2), 212-224.

Taylor, R. B. & Hale. M.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973-), 77(1), 151-189.

_____, R. B. (1989). Toward an environmental psychology of disorder: Delinquency, crime and fear of crime. In D. Stokols & I. Altman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2, 951-986). New York: John Wiley.

Villarreal, A. & Silva. B. F.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1725-1753.

Wilcox, Rountree. P. & Kenneth. C. Land.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risk, and routine activitie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and census trac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2), 147-180.

Wilson, J. Q. & Kelling, G. L. (1982).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49(3), 29-38.

3. 기타

매일경제(2010. 11. 11). 국내 뇌성마비 아동 100명당 3명.

서울신문(2015. 9. 4). 종용에 가해자 탄원서 쓴 장애인 피해자들.

세계일보(2014. 8. 20). 범죄피해 신고 장애인 · 노인 '보복 무방비'.

【Abstract】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Disabled Person's fear of crime: Focused on the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Lee, Sang-Yeo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disabled people's fear of crimes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 to relevant policies. For this, we scrutinize how the disabled perceive the fear toward felonies and the police action.

Further, we empirically tested how police action and their recognition toward it affects the fear toward crimes, on the basis of collective efficacy and victimization which is believed to have effects on people's fear of crimes.

As the physically disabled are incompetent to respond to the questions, we survey 122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for 25 branches of Seoul Association of Person Physically Disabled.

Our regression results show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s, which is in accord with preceding researches of the non-handicapped. While indirect victimization shows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ir fear toward crime, it is 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ventional confidence level. Contrarily, direct victimization shows positive correlation with it, and the coefficient is different from zero in conventional level. As it is proven from preceding studies, confidence in police action and their perception toward it has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ir fear of crimes.

Key words : fear of crimes,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collective efficacy, victimization, confidence in police action

* Prof. of Dept. of Liberal Art School of Jungwon University